'단결' 발판 딛고 서야할 법개정 투쟁

기획특집 ILO가입에 따른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의 방향

지난 9월 UN가입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ILO에 가입하게 되었다. ILO가입과 더불어 수많은 악법중 일부이지만 개폐조짐이 보이고 있고 노동운동계에 합법성 부여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액임금제' 등으로 노동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개악하려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개정안을 살펴보고자한다.

〈편집자 註〉

Ⅰ. ILO가입과 합법성

해마다 노동자들은 상반기 임금인상투쟁및 노조탄압저지 투쟁의 성과를 모아 하반기 국회개원에 맞추어 노동법개정투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88년 연세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권과 독점자본의 논리를 깨어나아가려 했던 투쟁이후 노동법 개정투쟁의 열기는 높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권의 집요한 탄압으로 인한 노동조합운동의 침체, 노동악법 개정에 대한 전망의 부재,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전술구사들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91년 하반기 노동법개악저지투쟁은 여러가지 점에서 89, 9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과 업종회의, 그리고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 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는 ILO기본 조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발한 공동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외형상 드러나는 모습만을 본다면 분명 지난 90년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진다.

상반기 투쟁이 임금인상 한자리수 억제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일부 노조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을 쟁취하는 등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면서도 전체 투쟁에서는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민중운동 진영 전체적으로도 5, 6월 투쟁의 성과를 광역의회 선거에서의 패배로 송두리채 날려 버린채 심각한 정치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음을 생각한다면 전노협의 성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활기의 실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곧 UN가입과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ILO가입이라는 외적요인이 가져다준 변화이다.

ILO가입은 그동안 독점자본의 집요한 이데올로기적 탄압앞에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탄압을 저지할 실질적 힘을 갖고 있지못해 조직력에 상당정도의 이완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전노협에 합법성 쟁취라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현실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합회, 전국병원노조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합법성 쟁취를 자신들의 주요한 투쟁과제로 삼아 왔던 업종회의 소속 노동조합들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91년 하반기는 노동조합운동이 그동안의 침체상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수년간의 변혁운동의 진로를 가름할 총선에서 민중운동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의 성과는 단지 노동조합 운동만이 아니라 민중운동 진영 전체가 상반기 투쟁의 패배를 딛고 재충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Ⅱ. 대중의 참여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앞서 전노협등 각 주체역량의 실천의 결과라기 보다는 ILO가입이라는 외적요인의 변화가 가져다준 유리한 국면의 한계를 바로보아야 한다. 실제로 ILO가입이 눈앞으로 다가선 현 시점에서도 노동부는 노동법 개악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오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허용하는 너그러움(?)마저 보이고 있다. 물론 서울, 광주, 부산등 몇몇 지역의 경우 지역의업종회의 소속 노조와 미가입노조를 망라하여 지역공대위를 구성해 놓고 있기는 하나 문제는 이러한 전국 혹은 지역차원의 성과가 바로 조합원들에게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데에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노동조합협의회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노동법개정투쟁 열기가 고양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는 본격적인 노동법개정 투쟁의 열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잡혀진 문화제등에 대해서도 저조한 동원으로 유산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조차 있다.

결국 ILO가입이라는 유리한 외적환경이라는 것도 조합원들에까지 생생하게 파고 들 수 있는 대중적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상층 지도부 차원에서 '헛물'이나 실컷 들이키고 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중들의 힘에 의한 실천 획득만이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Ⅲ. 노동법개정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과 활동의 자유를 획득하는 일이다. 이들중 '단결의 자유'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조항(노동조합 제3조 단서 5항), 교사·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제한(노동조합 제8조 및 국가공무원법 66조, 사립학교법 58조등), 해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 문제(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4항), 규약·결의·단체협약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에 대한 행정관청의 간섭(노동조합법 제34조등)등이다.

여기서 해고자의 조합원지위 안정문제, 업무조사·단체협약 개선 명령등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문제들은 임금투쟁, 단체협약 갱신투쟁 등에 대한 주요한 탄압요구이다. 반면 3조 5항 철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불인정 문제들은 노동조합들이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권리, 안정적인 조직발전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이들조항은 전교조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도구로 사용됨은 물론 전노협의 입장에서는 '산별노조 및 민주노총'건설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경우 IL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중 오로지 쿠바와 베트남만이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활동의 자유'라는 면에서 본다면 제3자 개입금지(노동조합법 제12조 2항) 및 정치활동 금지(노동조합법 제12조), 공익사업 직권중재와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대한 쟁이행위 금지 (노동 쟁의조정법 제30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중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철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가 단지 노동조합법에서 만이 아니라 '선거관련법'에서도 원천봉쇄되고 있음으로 해서 노동조합법에 국한된 삭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노총은 이들 독소조항 중 '복수노조 금지 조항' 및 '제3 자 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 두 조항으로 인해서 노총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상급단체로서의 지위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의 유지는 자신들의 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단하나의' 방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민주노조의 진영에 있어서는 이들 조항이 가장 핵심적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가 단지 경제적 실익향상만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산별노조,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반제반독점 민주주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들 조항을 반드시 철폐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요즘들어와서 조합원들내부에서 전노협의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있는 사정은 전노협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된다는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노동법 개정투쟁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단지 '노동법 개정'이라는 추상적 구호, '단결의 자유 쟁취'라는 포괄적 접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쟁점을 명확히 부각 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3조 5항 철폐, 민주노총 건설, 3자 개입금지 철폐, 재민주세력 총단결'이 그것이다.

이 병 학
〈전노협 정책위원〉

◇ ILO가입이 눈앞에 다가온 때도 정부는 노동법개악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ILO 가입, 전교조·전노협 합법성 쟁취 계기

복수노조 인정 · 3자개입 금지조항 철폐가 핵심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소고

Ⅰ. 인플레이션의 정의

인플레이션이란 일반적으로 '일반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 한다. 물가수준은 여러가지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균하여 산출하는 물가지수(price index)로 측정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곧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한편 물가는 모든 통계치가 가지는 오차이외에도 몇가지 특유의 오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논할때는 물가지수가 갖는 불가피한 불확실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Ⅱ. 인플레이션의 원인

인플레이션에 관한 전통적이론으로서는 국민전체의 총공급에 비해 총수요가 과다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수요견인설(demord-pull theory)'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말 실업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기는 커녕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공급측면에서의 생산비의 상승에 따라 생산물의 가격을 올려받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비용인상설(cost-push theory)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기침체속의 물가상승현상을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부른다.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70년 중반이후의 높은 명목임금상승율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발생의 주요원인이었고, 이것이 나아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약화, 수출부진을 결과하고 있기때문에 임금인상율의 자제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고있다는 주장이 풍미한 적이 있다.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등이 교차되어 나타날 때 우리는 임금 → 물가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올바로 보는 견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물가의 지속적 상승인플레이션은 그 발생원인이 매우 복잡다기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실질생산고에 대비하여 통화나 공채의과도한 팽창이 주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통화인플레가 있을 수 있고, 재화에 대한 수요(투자, 정부지출, 민간소비, 수출 등)가 경제의 공급능력을 상회하여 발생하는 수요인플레도 있을 수 있으며, 유통코스트, 자본코스트(이자율등), 임금코스트, 원자재코스트(석유가등) 등의 증대에 의한 비용인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요인들이 어떠한 내적관계속에서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Ⅲ.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1. 부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은 '예상된 인플레이션(anticipated inflation)'과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unanticipated inflation)'으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사람들이 물가상승의 정도와 시기를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대한 예상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 특히 장래의 물가상승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때 채무자는 이익을 보고 채무자는 손해를 보게된다.

2. 소득의 재분배

화폐소득이 일정한 정액소득자(금리생활자, 연금수령자 등)는 손해를 보고, 화폐소득이 물가상승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계층은 손해를 면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액소득자들의 화폐소득도 물가상승률과 비례해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격구조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왜곡

인플레이션은 절대물가수준의 상승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항상 상대가격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 물가상승도 시기적으로 평탄한 것이 아니라 굴곡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인플레이션이 이와 같은 양상을 띨 때에는 반드시 투기가 일어나는데 가격이 상승하리라 예상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가격이 하락하리라 예상되는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이다. 이 경우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재화에 대하여 화폐의 흐름이 증가(또는 감소)하고 그 재화의 생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또는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생산의 구조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장래 물가상승의 속도가 떨어질 경우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실업을 야기시킬 원인이 된다.

4.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상품에 비해 국산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므로 상대적으로 싸진 외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싸진 국산품은 해외시장에서 덜 팔리게 되므로 수출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Ⅳ.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

'한자리수 물가 상승율 유지'라는 목표하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근본원인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통화량의 과다공급만이 아니라 이에 앞서 한국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80년대 중반의 물가안정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원유가하락,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가격지도에 힘입는 바가 컸다. 그러나 현재 국제원자재가격은 상승하였고, 오랫동안 억제해왔던 정부 지도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또한 물가안정정책으로서의 긴축정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정체시켰고 민간의 생산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생산성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요과다보다는 공급과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양상이 더 많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후반의 국제수지흑자, 양대선거에서 풀린 막대한 양의 돈이 투기심리를 부추김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은 노동쟁의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을 올려준 후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물가안정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선노력, 기업가정신의 제고,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생활, 근로자들의 근로의식 등이 조화를 이룰때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물가안정 목표달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최근의 물가상승요인을 보면 임금, 국제원자재가격등 코스트 증가요인과 공급부족이라는 요인이 혼재된데다가 부동산투기 재편으로 인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부추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부족물량의 수입촉진을 통해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한편, 공공요금의 인상도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또한 여신관리나 공장입지문제 등 기업의 시설투자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통화팽창문제도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촉진시키고 있는 내외금리차의 해소, 재정의 통화조절기능 강화등 외환, 금리, 재정, 환율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 진 웅
〈대학원 석사4기·무역학〉

인플레, 왜곡된 경제의 그림자

정부의 경제구조 개선·개혁정책 물가안정 지름길

* 극동정유의 마스코트 백곰
크린에너지를 추구하는 극동정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총명하고 청정한 동물의 상징인 북극의 백곰을 형상화,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 및 친근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쳐라, 쳐라, 끝까지 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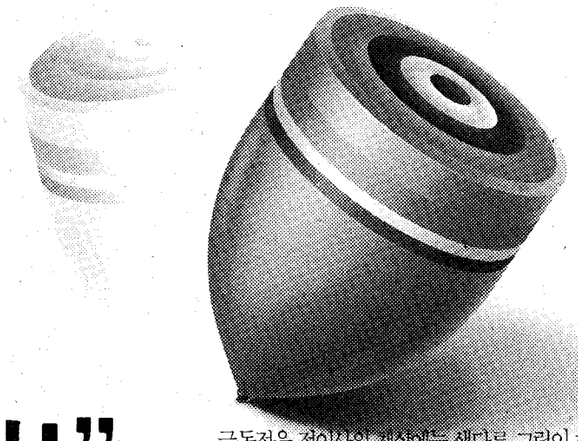

극동정유 정이사의 책상에는 색다른 그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팽이 —
이 팽이그림은 그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28년전 국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시절.
극동정유 부산공장을 세울때부터 이 그림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금사정은 말할 수 없이 쪼달리고
외국차관도 거의 조달이 안되는 상태에서
순수한 우리자본만으로 출발한 공장 건립은
이만 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산업 민영화를 처음으로 주도하는 회사의 창립멤버라는
보람으로 이겨내기엔 난관도 대단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자체기술과 인력으로
해결해가는 와중에 토사가 무너져 인부가 다치고
풍랑으로 하역중의 자재가 떠내려가 모두가 실의에 잠겼을 때,

그는 말없이 책상머리에 이 팽이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팽이는
그에게 쉴새없이 채찍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쳐라 쳐라 끝까지 쳐라."

이제는 안정감있게 돌아가는 팽이처럼 회사의 기반이
탄탄해진 지금.
정이사는 자신의 무기력과 나태를 채찍질한 것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이 한마디였다고 털어 놓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일하라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극동정유주식회사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223 (세양빌딩) /대표전화 : 735-6300
사서함 C.P.O. 269/TELEX : K26245, K33112/FAX : 733-5481
자매회사 : 극동도시가스(주), 세일석유(주)